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23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조승래·김상희·김승수

김철민 • 유정주 • 이규민

이병훈 • 이상헌 • 이원욱

임오경 · 조응천 · 최인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유물·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 토되는 인골(人骨)과 미라(mummy)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여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.

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·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,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, 과거의 문화 및 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의 처리에 필

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·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·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)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(人骨), 미라(mummy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(現狀)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(이하 이 조에서 "중요출토자료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인골,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.
 -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(이하 "연고자"라 한다)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 - 2.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
 -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인골,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 조치를 하려는 경우

- 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,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경우 중요출토자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(이하 "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- 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 중 "현상(現狀)을"을 "현상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견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,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 선 설> 제14조의2(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) ① 발굴허가를 받 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에서 인골(人骨), 미라(mumm y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 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(現狀)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 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(이 하 이 조에서 "중요출토자료"
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 치할 수 있다. 다만, 인골, 미라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.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

하 "연고자"라 한다)가 없거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.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 를 알 수 없는 인골, 미라에 대 하여 연구하거나 보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 하고 인골,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(이하 "중요출 토자료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및 보 제16조(매장문화재 현상변경) 이 제미 발굴된 매장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현상(現狀)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	관	Ę	들어		필	요	한		ㅂ]	용	의		전	<u>부</u>
	<u>또</u>	<u>=</u>	일	부	를	ス] 운] रू	할	수	. <u>수</u>	ļ	<u>구.</u>	
	<u>7</u>	ž	중.	<u>)</u>	ξ.E	ミス	아 <u>토</u>	コ エ		전·	문.	7]	관	의
	<u> 기</u> 기	성.	운	영	Ę	Į.	J	· -	빞	에	ž	중	요	출
	<u> 토</u> Z	아 <u>호</u>	문으	1	연	구	· <u></u>]]	간	냥	-에		필	요_
	한	入	·항	-은	-	대	통	령	궝	<u>0</u>	로		정	한
	다.													
1	162	조(매.	장-	문;	화 <i>:</i>	재	ਰ੍ਹ	目と	상년	月を])	_	
												_		
	현실	가슬	<u></u>											
			<u>-</u> 											
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•